

##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9. 11. 10.

총무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11월 1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9년 11월 1일
- 다. 상정일자 : 제66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99. 11. 10.)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조 성 대

#### 가. 개정이유

정부시책에 따라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저소득층 기초 생활보장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에 별정직공무원으로 배치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현재 별정직 정원 16명을 29명으로 증원코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마포구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1,223명에서 13명을 증원하여 1,23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197명에서 13명을 증원하여 1,210명으로 함. (안 제2조본문및 동조제1호)
- 2000년 7월 31일까지 적용하는 마포구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1,319명에서 13명을 증원하여 1,33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93명에서 13명을 증원하여 1,306명으로 함. (안, 조례 제428호 부칙 제2조, 표1)
- 2001년 7월 31일까지 적용하는 마포구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1,276명에서 13명을 증원하여 1,28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50명에서 13명을 증원하여 1,263명으로 함. (안, 조례 제428호 부칙 제2조, 표2)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별정직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정부시책에 의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재 별정직 정원 16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추가로 13명을 총원하여 29명으로 증원하므로써 마포구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이 13명 증원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1,223명에서 13명이 증원된 1,236명으로 개정하고 연차별로 정원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조례 제428호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중 2000년 7월 31일까지 적용한 「표1」 과 2001년 7월 31일까지 적용한 「표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표의 정원란중 「표1」에서는 정원의 총수 1,319명을 13명 증원하여 1,33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293명을 13명 증원하여 1,306명으로 하며, 「표2」에서는 정원의 총수 1,276명을 13명 증원하여 1,28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250명을 13명 증원하여 1,263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나 부칙규정은 현행조례의 부칙 다음에 계속 증보·편집하는 것이 일반적인 조례입법형식이나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99년 10월 11일 조례 제428호로 개정공포된 현행조례 부칙을 개정하여 흡수·편집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입법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는 되나 추후 개정내용을 편집할 때에는 개정 일자등을 삽입하여 편집하는 것이 동 개정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조영천 위원) : 증원할 사회복지직은 어느 부서에 배치할 계획인가?
- 답변요지(조성대 총무과장) : 구분청에도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각동에 골고루 배치토록 하겠음.
- 질의요지(신봉현 위원) : '91년 7월 8일 이전에 채용된 7급 별정직만 일반직 7급으로 전환하면 그 이후 임용자는 8급으로 되는가?
- 답변요지(조성대 총무과장) : 서울시 각구 교류를 통하여 직급을 조정하고 있음.

- 질의요지(유응봉 위원장) : 일반직으로 임용시 징계등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전환이 불가능한 것인지?
- 답변요지(이춘기 행정관리국장) : 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정해지겠지만 우리구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없음.
- 질의요지(유남렬 위원) : 우리구 사회복지사는 몇 명이며, 직급별로는 몇명인가?
- 답변요지(조성대 총무과장) : 별정직복지사 14명, 일반직복지사 2명으로 총 16명이며, 별정직은 7급이 13명, 8급이 1명이고, 일반직으로 9급이 2명 있음.
- 질의요지(유남렬 위원) : 그러면 우리구 사회복지직 7급 정원이 11명이면 현재 별정직 복지사중 2명은 8급으로 되는가?
- 답변요지(조성대 총무과장) : 7급 2명은 각구 교류를 통해 타구로 진출가는 것으로 기조정됨.
- 질의요지(정만직 부의장) : 사회복지직 정원 29명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 답변요지(조성대 총무과장) : 29명으로 업무수행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내년도에 4명을 추가로 증원해 줄것을 요청하였음.
- 질의요지(정만직 부의장) : 별정직인 사회복지사가 일반직으로 전환될 경우 행정직과 마찬가지로 승진이 가능한가?
- 답변요지(조성대 총무과장) : 현재의 세무직과 마찬가지로 6급까지는 사회복지직으로 있으면서 5급 승진시에는 행정직으로 직이 바뀜.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 안 의 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1999. 10.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 1. 개정이유

정부시책에 따라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에 별정직공무원으로 배치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현재 별정직 정원 16명을 29명으로 증원코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임.

## 2. 주요개정골자

가. 마포구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1,223명에서 13명을 증원하여 1,23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197명에서 13명을 증원하여 1,210명으로 함.  
(안제2조 및 본문 및 동조 제1호)

나. 2000년 7월 31일까지 적용하는 마포구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1,319명에서 13명을 증원하여 1,33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93명에서 13명을 증원하여 1,306명으로 함.(안, 조례428호 부칙 제2조, 표1)

다. 2001년 7월 31일까지 적용하는 마포구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1,276명에서 13명을 증원하여 1,28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50명에서 13명을 증원하여 1,263명으로 함.(안, 조례 제428호 부칙 제2조, 표2)

## 3. 조례안(별첨)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1999.8.31 법률 제 6002 호) 제103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1999.9.9 대통령령 제16,550호) 제21조등

나. 예산조치 : 필요

다. 협의 : 예산부서 협의 필요

라. 기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1,223명”을 “1,236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197명”을 “1,236명”으로 한다.

조례 제428호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조중 「표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표의 정원란중 “1,319명”을 “1,332명”으로, “1,293명”을 “1,306명”으로 각각 하며, 동조중 「표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 정원표의 정원란중 “1,276명”을 “1,289명”으로, “1,250명”을 “1,263명”으로 각각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223명으로 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1,197명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6명</p> <p>부칙(1999년10월11일 조례 제428호)</p>	<p>제2조(정원의 총수) ----- ---1,236명---</p> <p>1. ----- : 1,210명 2. (현행과 같음)</p> <p>부칙(1999년10월11일 조례 제428호)</p>																																
<p>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7월31일까지 「표1」을, 2001년7월31까지는 「표2」를 각각 적용한다.</p> <p>「표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정 원</th> </tr> </thead> <tbody> <tr> <td>정원의 총수</td> <td>1,319명</td> </tr> <tr> <td>1. 집행기관의 정원</td> <td>1,293명</td> </tr> <tr> <td>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td> <td>26명</td> </tr> </tbody> </table> <p>「표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정 원</th> </tr> </thead> <tbody> <tr> <td>정원의 총수</td> <td>1,276명</td> </tr> <tr> <td>1. 집행기관의 정원</td> <td>1,250명</td> </tr> <tr> <td>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td> <td>26명</td> </tr> </tbody> </table>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1,319명	1. 집행기관의 정원	1,293명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6명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1,276명	1. 집행기관의 정원	1,250명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6명	<p>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 ----- -----</p> <p>「표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정 원</th> </tr> </thead> <tbody> <tr> <td>-----</td> <td>1,332명</td> </tr> <tr> <td>1. -----</td> <td>1,306명</td> </tr> <tr> <td>2. -----</td> <td>---</td> </tr> </tbody> </table> <p>「표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정 원</th> </tr> </thead> <tbody> <tr> <td>-----</td> <td>1,289명</td> </tr> <tr> <td>1. -----</td> <td>1,263명</td> </tr> <tr> <td>2. -----</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정 원	-----	1,332명	1. -----	1,306명	2. -----	---	구 분	정 원	-----	1,289명	1. -----	1,263명	2. -----	---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1,319명																																
1. 집행기관의 정원	1,293명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6명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1,276명																																
1. 집행기관의 정원	1,250명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6명																																
구 분	정 원																																
-----	1,332명																																
1. -----	1,306명																																
2. -----	---																																
구 분	정 원																																
-----	1,289명																																
1. -----	1,263명																																
2. -----	---																																